
2017학년도

재외국민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 주의사항

입학전형 관련 모든 내용은 구조조정 진행결과와 향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홈페이지(공지사항)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U
FS

부산외국어대학교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7학년도】
재외국민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CONTENTS

I. 전형일정	2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3
III. 지원자격	4
IV. 제출서류	7
V. 원서접수	10
VI. 전형방법	11
VII.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1
VIII. 유의사항	12

<관련 서식>

1. 수학기간 기록표
2. 학교과정 소개서
3. 외국 학교 관련사항 기록표

※ 관련 서식은 우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enter.bufs.ac.kr>)에 "입시자료실"에 공지함.

I

전형일정

모집 시기	내 용		일 정	비 고	
수시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2016. 9. 12(월) ~ 21(수) 18:00까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주)진학어플라이	
	서류제출		2016. 9. 12(월) ~ 23(금) 17:00까지	[우]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입학관리팀 051) 509-5302~5	
	면접고사	고사장 및 입실시간 안내	2016. 11. 11(금)	-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면접시간표 조회 - 면접고사 시작 시간은 분반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나눔	
		고사일	2016. 11. 19(토)		
	합격자 발표		2016. 12. 12(월) 17:00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합격증 및 등록확인예치금고지서 On-Line 출력		2016. 12. 12(월) 17:00 이후 합격자 발표순으로 계속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등록확인예치금 납부(300,000원)		2016. 12. 19(월) ~ 21(수) 16:00까지	부산은행 가상계좌 납부	
	등록	1차	발표	2016. 12. 22(목) 09:00 이후	【개별 통보하지 않음】 - 발표 :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 등록금고지서 :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 등록 : 부산은행 가상계좌 납부
			납부	2016. 12. 22(목) 09:00 ~ 16:00까지	
		2차	발표	2016. 12. 23(금) 09:00 이후	
납부			2016. 12. 23(금) 09:00 ~ 16:00까지		
3차 이후		발표	2016. 12. 23(금) ~ 28(수) 21:00까지 우리대학교 일정에 따라 수시로 발표	【개별 전화 통보함】	
		납부	2016. 12. 26(월) ~ 29(목) 개별 추가합격 통보 시 안내		
잔여(최종)등록금 납부		2017. 2. 3(금) ~ 6(월) 16:00까지	부산은행 가상계좌 납부		
합격자 주의 사항	<p>등록확인예치금 및 잔여(최종)등록금 고지서는 수험생에게 개별 발송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부산은행 가상계좌에 납부하여야 함.</p> <p>⇒ 둘 중 하나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 불합격 처리됨.</p> <p>※ 등록확인예치금만 납부하고 잔여(최종)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p>				

※ 전형일정은 우리대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가. 우리대학교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함

단,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입학정원에 관계없이 우리대학교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집함

대학	모집단위		계열	2017 입학 정원	최대선발 가능인원		비고
	학부(과)	전공/트랙			입학정원 2% 이내 모집단위 10% 이내	정원제한 없는 재외국민	
영 일 중 대 학	영어학부	언어문화·커리어영어 교직 통번역·컨벤션영어 교직	인문 사회	100	10 이내		
	영어학부(전일제)			30			
	일본어창의융합학부	일본언어문화콘텐츠 교직 MICE통번역일본어 교직 호텔관광비즈니스일본어 일본IT		130	13 이내		
	중국학부	중국어전공(30) 교직 중국지역통상전공(40)		70	7 이내		
	중국학부(전일제)			30			
	G2(영·중)융합학부	문화콘텐츠마케팅 모바일비즈니스 G2커뮤니케이션		85	8 이내		
글로벌 인문 융 합 대 학	유럽학부	독일언어문화전공(32) 교직 프랑스언어문화전공(32) 교직 이탈리아언어문화전공(33) EU지역통상전공(33)	인문 사회	97	10 이내		
	중남미학부	스페인어전공(60) 교직 포르투갈어전공(40)		33	3 이내		
	러시아·터키중양아시아 학부	러시아언어통상전공(65) 교직 터키·중양아시아어전공(35)		100	10 이내		
	동남아창의융합학부	태국·라오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베트남·캄보디아 미얀마 ICT언어처리		160	16 이내		
	중동·지중해지역학부 교직			35	3 이내		
	인도학부	인도언어문화전공(30) 인도지역통상전공(25)		55	5 이내		
	한국어문화학부	한국어교육 한국어문 다문화교육		60	6 이내		
	파이데이아창의인재학과			25	2 이내		
	역사관광·외교통상학부	역사관광전공(30) 외교통상전공(30)		60	6 이내		
	글로벌 비즈니스 대 학	경영학부		경영전공(60) 교직 회계전공(45) 교직	인문 사회	105	10 이내
국제비서·경제금융학부		국제비서전공(40)	40	4 이내			
		경제금융전공(45)	45	4 이내			
국제무역·마케팅학부		국제무역전공(40) 국제마케팅전공(30)	70	7 이내			
글로벌 컬 창 의 융 합 대 학	영상콘텐츠융합학과		공학	30	3 이내		
	경찰정보보호학부	경찰행정전공(35)		35	4 이내		
		사이버경찰전공(20)		20	2 이내		
		정보보호전공(30)		30	3 이내		
	스포츠산업융합학부	사회체육전공(30) 스포츠산업전공(30)		60	6 이내		
		재활복지전공(25)		25	2 이내		
국제학부	글로벌자율전공 글로벌한국어 * K-문화콘텐츠 * 글로벌비즈니스 * 글로벌소프트웨어 *	20	2 이내				
글로벌 IT 대 학	컴퓨터소프트웨어융합 학부	지능형컴퓨터소프트웨어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빅데이터소프트웨어	공학	100	10 이내		
	지능형IT융합학부	지능형로봇 IoT(사물인터넷) 교직 스마트에너지 교직		100	10 이내		
				1850	20	입학정원 제한없음	

* 국제학부의 글로벌자율전공은 내국인학생 전용이며, 트랙명에 * 표시는 외국인학생 전용임.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구조조정 및 향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지원자격

가. 입학정원의 2% 이내(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모집 재외국민

-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 ①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 ②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지원자격	자격요건	공통 학력요건
영주교포 자녀	부모 및 지원자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고교과정 2년 연속 또는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중·고교과정을 계속 재학한 자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않은 경우,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중·고교과정을 재학한 자)
해외 파견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 (부모 중 1명의 체류기간 적용)	
해외 파견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 (부모 중 1명의 체류기간 적용)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 (부모 중 1명의 체류기간 적용)	
유치과학자·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부모 중 1명의 체류기간 적용)	
외국유학·연수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유학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거나 체류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 (부모 모두 외국에 체류해야 함)	
현지법인·자영업자·해외취업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자영업을 하거나 현지법인에서 근무 또는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거나 체류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 (부모 모두 외국에 체류해야 함)	
선교사 자녀	외국에 2년 이상 선교목적으로 파송되어 체류하거나 체류하고 귀국하는 목회자의 자녀 (부모 모두 외국에 체류해야 함)	

나. 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지원자격	자격요건	공통 학력요건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지고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재학기간 인정범위

학제	년	2학기제	3학기제	쿼터제
재학기간	2년	4학기	6학기	8학기

다. 자격요건 유의사항

【영주교포 자녀】

- ① 부모 및 지원자의 국적이 모두 한국어이어야 함
- ② 지원 당시 부모 및 지원자의 주민등록은 이민말소가 되어야 함
- ③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영주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할 경우 인정(대사관·영사관의 확인 필요)

【해외 파견근무 공무원의 범위】

-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②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해외 파견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②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③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 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④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⑤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의 범위】

- ① 외국정부 : 해당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②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라. 외국학교 소재지 및 인정기준

- ① 외국학교 소재지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단,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②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교육과정)이 인정되는 교육기관(학교)이어야 함
- ③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제외

마. 재학기간의 인정 기준

- ① 재학기간 : 외국의 고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에 계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
- ② 기간의 산정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연속으로 재학하지 못했다면 고교과정 1년 이상 포함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인정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
- ③ 외국소재 유학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④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함
[외국의 1~6학년 과정은 초등학교, 7~9학년 과정은 중학교, 10~12(13)학년 과정은 고등학교]
- ⑤ 재학기간 중 재학국에 실제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방학 등 수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학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 ⑥ 초·중·고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의 경우, 초·중·고교 과정 12년의 기간 중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지원자격을 부여함(대학과정을 고교과정으로 인정).
【단, 전과정 해외이수자는 학제가 12년 미만이라도 초·중·고 전과정을 해당국가에서 이수하였다면 지원 가능하며,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 ⑦ 해외 고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교과정에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하는 경우 해당 해외 고교 과정은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⑧ 학제가 다른 국가로 산·편입학하는 과정에서 1개 학기 범위 내에서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국내수학기간과 외국수학기간이 중복된 경우, 해외에서 동일한 학년·학기를 중복 이수한 경우 1개 학기(6개월)만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 (1개 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학기분은 인정하지 않음)

- ⑨ 해외파견근무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 현지법인, 자영업자, 해외취업자는 외국근무기간, 교포는 영주기간, 외국유학·연수자는 외국유학·연수기간, 선교사는 해외 파송기간 내에서 자녀들의 외국학교 재학기간만을 인정
 - 해외근무기간 : 증명서상(재직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 해외근무자의 근무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⑩ 학교과정 인정기준

교육연한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한 학교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외국 학제에 의한 학교과정	5-3-4-4제	5년					3년			4년				4년			
	6-4-3-3제	6년						4년			3년			3년			
	6-3-2-5제	6년					3년			2년		5년					
	8-4-4제	8년								4년				4년			

※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외국학제가 10년 ~ 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맞는 학년에 편입학시킴 (단, 해당국에서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제외).

바. 부모의 거주기간(근무기간, 파견기간) 산정 기준

- ① 거주기간 :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산정함
- ② 근무국에 실제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국내출장 등의 불가피한 경우만 인정

사.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해당 학교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음

아. 입학허용기간 제한은 없음

IV 제출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1) 수학기간 기록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첨부 1)
- 2) 학교과정 소개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첨부 2)
- 3) 외국 학교 관련사항 기록표(우리대학교 소정양식, 첨부 3)

나. 추가 제출서류

- ※ 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에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을 받은 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이 없는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로 처리함)
- ※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받은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공증번역하지 않은 서류는 구비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서류 미제출로 처리됨)

영주 교포 자녀	
1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3	주민등록말소등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4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자 및 부모 모두)
5	영주권 사본 (지원자 및 부모 모두)
6	재외국민 등록필증(지원자 및 보호자)

해외 파견근무 공무원 자녀	
1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3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4	주민등록말소등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5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자 및 보호자)
6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지원자 및 보호자)
7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해외 파견근무 상사직원 자녀	
1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3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4	주민등록말소등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5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자 및 보호자)
6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지원자 및 보호자)
7	제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
8	해외지사(법인)설치 관계서류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1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3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4	주민등록말소등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5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자 및 보호자)
6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지원자 및 보호자)
7	제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

유치과학자·교수요원 자녀	
1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3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4	가족관계증명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자 및 보호자)
6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지원자 및 보호자)
7	정부초청·추천에 관한 증빙서류

외국 유학·연수자 자녀	
1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3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4	가족관계증명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자 및 부모 모두)
6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지원자 및 부모 모두)
7	유학·연수사실증명서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1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3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4	가족관계증명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자 및 부모 모두)
6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지원자 및 부모 모두)
7	현지법인설치 관계서류

해외 취업자 자녀	
1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3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4	가족관계증명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자 및 부모 모두)
6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지원자 및 부모 모두)
7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자녀	
1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자 및 부모 모두)
5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지원자 및 부모 모두)
6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 증빙서류)
7	납세증명서

선교사 자녀	
1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3	경력(재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자 및 부모 모두)
6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지원자 및 부모 모두)
7	해당 종교단체장 추천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1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자)
5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2	학력증명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다. 제출서류 안내

- 수학기간 기록표, 학교과정 소개서, 외국 학교 관련사항 기록표 (우리대학교 소정 양식)
 -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해야 함 (오류작성, 기재착오 및 누락, 또는 판독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7년 2월 24일(일본 3월 말)까지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학기간(입학~졸업)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Seal)이 있어야 함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 국내 초·중·고교의 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함
 - 성적우수 등으로 월반, 조기졸업을 한 경우 이에 관한 해당 학교의 증명서 첨부
 - 외국학교 성적증명서는 학년/학기 단위가 명시되어야 함
- 영주권 사본
 - 지원자 및 부모 모두 해당, 영주권 취득일이 반드시 명시
- 제3국 수학기정서
 - 지원자가 부모 체류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 A4용지에 학생 인적사항, 제3국 수학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부모 체류국 재외공관에서 확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주재국 재외공관장이 발급하여야 하며 부, 모, 지원자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명시
- 주민등록말소등본
 - 필요할 경우 우리대학교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요구할 수 있음
 - 입학원서접수 개시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해외지사(법인)설치 관계서류
 - 외국환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해외지사 및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 : 해외지사 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 외국환은행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허가한 현지법인·금융기관 : 해외법인설치확인서
- 현지법인설치 관계서류
 - 외국정부 발급
- 납세 증명서류
 - 납세 증명서류는 지원자격 취득기간(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중·고교과정을 계속 재학한 기간) 동안의 세금납부 증명서류를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 해외파견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기관의 본사(인사권자) 발급
 - 지원자격 취득기간 중 경력(재직)증명서상에 휴직 또는 연수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및 그 이전 1년간의 급여기록사실에 관한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 유학·연수사실증명서
 - 해당 대학·연수기관 발급, 유학·연수기간 및 유학·연수과정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 해당국 근무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또는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학력증명서
 - 통일부 또는 관할지방 자치단체 발급

라. 제출방법

① 인터넷 접수 후 구비서류를 2016. 9. 12(월) ~ 23(금) 17:00까지 등기우편, 택배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토·일·공휴일 제외)

② 봉투 겉면에 지원자의 성명, 수험번호, 전형유형, 지원 학부(과)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③ 제출처: 우)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입학관리팀

④ 원서접수 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대학교 입학관리팀에 연락바람

※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마. 유의사항

① 자격 기준이 되는 서류가 미비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할 수 있도록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③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는 우리대학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④ 제출 서류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⑤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7년 2월 24일(일본 3월 말)까지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⑥ 직계가족의 불법체류사실이나 기타 개인사정으로 비자발급이 불허되거나, 늦어져 입학일까지 국내입국이 안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 취소를 함
- ⑦ 외국소재 수학(修學) 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전 과정 성적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수학한 학생

- 아래 사항 중 택 1
 - 해당국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서류를 제출
 -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거나, 주한 해당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서류를 제출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에서 수학한 학생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거나, 주한 해당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서류를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년 7월 14일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2013년 11월 7일 기준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105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협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0404.go.kr)를 참조 바람
[미가입국 : 중국(마카오/홍콩 제외), 캐나다, 필리핀 등 - 영사확인 해당국].

- 외국소재 수학(修學)학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출신학교 수학(修學)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입학·졸업(예정) 연월일 및 재학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장의 직인/서명 확인을 받은 서류여야 함.
- 외국소재 수학(修學)학교 성적증명서는 전 학년 성적을 증명하며, 학년/학기 단위가 명시되어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외국에서 수학(修學)한 사실 증명이 미비할 경우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V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9. 12(월) ~ 21(수) 18:00까지

- ① 원서접수는 인터넷접수만 실시하며, 교내 창구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② 인터넷 원서접수는 24시간 가능함(단, 접수 마감일에는 18:00에 접수를 종료함)

나. 접수방법(접수절차)

- ⇒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주)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 접속
- ⇒ 사용자 로그인(비회원인 경우 회원가입)
- ⇒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확인(지원자격, 전형일정, 전형료 등)
- ⇒ 입력 순서대로 원서 작성(입력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하고 저장한 후 확인)
- ⇒ 전형료 결제
- ⇒ 전형료 결제 후 출력물(수험표 등) 출력
- ⇒ 제출서류 송부

다. 전형료 : 40,000원 (인터넷 접수 수수료는 전형료에 포함)

라.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 ① 접수가 완료된 후 입학원서의 수정 및 접수 취소는 불가함
- ② 인터넷접수는 전형료 결제 후 수험표를 확인해야만 완료되며,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
- ③ 입학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였더라도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형대상에서 제외됨

VI 전형방법

가. 면접고사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구 분	면접	총점
배점(비율)	300점(100%)	300점

① 면접고사 일시 : 11. 19(토)

② 개인별 고사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11. 11(금) 우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 면접고사 후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면접 결시자, 서류 미제출자 및 미비자,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함.

나 최저 학력기준 : 없음

다.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면접고사 평가영역 내 전공 적성 성적 → ② 원서접수 선지원자 순으로 선발함

VII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합격자 발표 : 2016. 12. 12(금) 17:00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 합격자발표, 등록확인예치금 및 잔여(최종)등록금 납부기간 등 모든 전형일정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모든 납부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

⇒ 둘 중 하나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 불합격 처리됨.

[등록확인예치금만 납부하고 잔여(최종)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등록금 전액 면제를 받는 장학생(실 납부액 0원)도 반드시 등록금고지서 조회 페이지에서 「전액장학생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나 등록금 납부

① 등록확인예치금(300,000원) 납부 : 2016. 12. 19(월) ~ 21(수) 16:00까지

② 잔여(최종)등록금 납부 : 2017. 2. 3(금) ~ 6(월) 16:00까지

다 등록포기 및 등록확인예치금 환불(온라인만 가능)

기간	2016. 12. 22(목) ~ 28(수) 16:00까지
환불 절차	① 우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er.bufs.ac.kr)에 접속하여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② 신청자 확인 후 승인 ③ 환불 ※ 등록금 환불은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에 작성된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됨.

※ 환불절차는 우리대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 환불절차는 12월 21일(수) 이후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함.

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①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 간에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 가능함[교육대학 포함]
(단,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 가능)
- 우리대학교의 전형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수시의 모든 전형간 복수지원이 가능함.
-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6회를 초과한 지원사항은 취소 처리됨.

②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 포함)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됨.

③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한국대학교육협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함.

④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충원 합격자 포함)는 합격한 대학 중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해야 함.
-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나. 기타 유의사항

- ①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② 전형기간 중 입시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함
- ③ 구비서류의 지연도착, 구비서류의 미비 또는 판독불가, 번역오류,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주소의 불명, 연락두절(연락처 오기재 등), 모집요강에서의 요구사항 미이행, 기타 수험생의 과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우리대학교의 처리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④ 추가 합격자 발표 : 2016. 12. 22(목) ~ 28(수) 21:00까지
 -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인원만큼 해당 전형 모집단위의 예비후보자 중 성적순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발표함.
 - 전형성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대학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는 추가합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등록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되거나 지원자가 성적순으로 모집인원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 ⑤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지원자격 부적격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⑥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⑦ 2017년 2월 졸업예정자가 졸업을 못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⑧ 지원자가 입력(기재)한 휴대폰 번호는 입시정보제공 및 합격자발표와 관련하여 우리대학교에서 발송하는 SMS(휴대폰 단문메시지) 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소는 입학안내 유인물 우편발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⑨ 지원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는 대학의 입학, 학사, 장학 및 통계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⑩ 이 요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지원자격,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enter.bufs.ac.kr>)에서 확인한 후 입학관리팀(051)509-530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